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

[시행 2025. 2. 5.] [금융감독원세칙, 2025. 2. 3., 일부개정]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제2조(정의)

제2장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등

제2조의2(정보처리시스템 가동기록)

제2조의3(망분리 적용 예외)

제2조의4(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고)

제2조의5(법인 이용자 정보의 사용에 대한 동의)

제2조의6(정보보호시스템 운영)

제2조의7(프로그램 통제)

제3조(자체 보안성심의 기준 등)

제3조의2(정보기술부문 계획서 제출)

제4조삭 제

제5조삭 제

제6조삭 제

제7조삭 제

제7조의2(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・평가의 내용)

제7조의3삭 제

제7조의4(정보기술부문 사고보고)

제8조(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)

제8조의2(국외에서 주로 영업하는 국외 사이버몰의 판단기준)

제8조의3(거래금액 기준 초과시 신고 등)

제3장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등

제9조(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방법 등)

제9조의2(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)

제10조(업무보고서의 제출)

제11조(경영지도비율 산정기준)

제4장 보칙

제12조삭 제

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



[시행 2025. 2. 5.] [금융감독원세칙, 2025. 2. 3., 일부개정]

금융감독원(디지털금융총괄국), 02-3145-7126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「전자금융거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동법 시행령(이하 "시행령"이라 한다)과 「전자금 융감독규정」(이하 "규정"이라 한다)에서 금융감독원장(이하 "감독원장"이라 한다)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2. 05. 24.]

제2조(정의) 이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ㆍ시행령ㆍ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[전문개정 2012. 05. 24.]

제2장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등

제2조의2(정보처리시스템 가동기록) 규정 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일시, 접속자 및 접근을 확인할 수 있는 접근기록
- 2. 전산자료를 사용한 일시, 사용자 및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접근기록
- 3. 정보처리시스템내 전산자료의 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 로그인·액세스 로그 등 접근기록 [본조신설 2025. 2. 3.]
- **제2조의3(망분리 적용 예외)** ① 규정 제15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.<개정 2020. 11. 6., 2022. 12. 29.>
 - 1. 내부 통신망에 연결된 단말기가 업무상 필수적으로 외부기관과 연결해야 하는 경우(다만, 이 경우 필요한 서비스번호(port)에 한하여 특정 외부기관과 연결할 수 있다).
 - 2. 규정 제12조의 보안대책을 적용한 단말기에서 전용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통신망을 이용하여 외부망으로부터 내부 업무용시스템으로 원격접속 하는 경우
 - ② 규정 제15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22. 12. 29.>
 - 1. 「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정보처리 업무를 국외 소재 전산센터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(다만, 해당 국외 소재 전산센터에 대해서는 물리적 방식 외의 방법으로 망을 분리하여야 하며, 이 경우에도 국내 소재 전산센터 및 정보처리시스템 등은 물리적으로 망을 분리하여야 한다)
 - 2. 업무상 외부통신망과 연결이 불가피한 다음의 정보처리시스템(다만, 필요한 서비스번호(port)에 한하여 연결할 수 있다)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가. 전자금융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특정 외부기관과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정보처리시스템
- 나. DMZ구간 내 정보처리시스템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내부통신망의 정보처리시스템
- 다. 다른 계열사(「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」제2조제3항의 "계열사"를 말한다)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처리시스템
- 3. 규정 제23조의 비상대책에 따라 원격 접속이 필요한 경우
- 4.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, 개발,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와 외부통신망과의 연결 구간, 규정 제15조제1항제3호의 내부 업무용 시스템과의 연결 구간을 각각 차단한 경우<신설 2016. 5. 12.>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별표 7에서 정한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.

[종전의 제2조의2에서 이동]

- **제2조의4(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고)** ① 규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는 양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.<개정 2022, 12, 29,, 2025, 2, 3,>
 - ② 규정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경우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「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」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서류
 - 2. 규정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 및 결과
 - 3. 규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
 - 4. 규정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
 - 5. 규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
 - 6. 규정 별표 2의5의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을 포함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서

[종전의 제2조의3에서 이동]

- **제2조의5(법인 이용자 정보의 사용에 대한 동의)** 규정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동의를 얻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.
 - 1. 테스트의 목적 및 기간
 - 2. 사용되는 이용자 정보의 항목
 - 3. 테스트 기간 중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통제 계획
 - 4. 테스트 종료 후 테스트에 사용된 이용자 정보의 파기 계획

[종전의 제2조의4에서 이동]

- 제2조의6(정보보호시스템 운영)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최소한의 서비스번호(port)와 기능만을 적용하고 업무목적 이외의 기능 및 프로그램을 제거할 것
 - 2. 보안정책의 승인, 적용, 등록, 변경 및 삭제에 대해 기록·보관하고 적용된 보안정책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
 - 3. 정보보호시스템 원격관리를 금지할 것. 다만, 원격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전용회선(전용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가상의 전용회선을 포함한다) 사용, 접근통제 등을 포함한 원격 접속 보안 대책을 수립·운용할 것
 - 4. 정보보호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시스템 상태의 감시, 경고가 가능하도록 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추고 시스템 장애, 가동중지 등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백업 및 복구 절차 등을 수립·운용할 것

[본조신설 2025. 2. 3.]

제2조의7(프로그램 통제) 규정 제29조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적용대상 프로그램 종류 및 등록・변경・폐기 방법을 마련할 것
- 2. 프로그램 변경 전후 내용을 기록 관리할 것
- 3. 프로그램 등록・변경・폐기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을 것
- 4. 변경 필요시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테스트 시스템으로 복사 후 수정할 것
- 5.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은 업무담당자에 한정하고, 적절한 접근권한(읽기·쓰기·실행 등 포함) 설정 및 중요 조작에 대한 책임자 사전 승인 등 통제절차를 수립·운용할 것
- 6. 프로그램 반출, 실행프로그램의 생성 및 운영시스템 적용은 해당 프로그램 담당자 이외의 자가 수행할 것
- 7.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・무결성・가용성 및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테스트 및 관련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할 것
- 8. 운영체제, 데이터베이스관리프로그램 등의 시스템 프로그램도 응용프로그램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것
- 9. 프로그램 설명서, 프로그램 목록 및 사용자·운영자 지침서 등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·관리할 것
- 10.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도입·분석·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, 운영시스템 적용 전에 동 대책이 반영되었는지 충분히 검증하고 적용할 것

[본조신설 2025. 2. 3.]

제3조(자체 보안성심의 기준 등) ① 규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- 1.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규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보안성심의를 실시한 후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승인을 받을 것
- 2. 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 관련 표준을 제정하는 경우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보안성심의를 실시할 것(다만, 이 경우 특정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른 금융회사등을 대표하여 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 성심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).<개정 2014. 3. 31,, 2016. 7. 27.>
-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체 보안성심의 결과보고서의 양식은 제 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, 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각각 따른다.<개정 2014. 3. 31., 2016. 7. 27.>
-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체 보안성심의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규정 제37조의 6제1항의 침해사고대응기관,「정보통신기반보호법」제16조제1항의 정보공유·분석센터 등 외부기관에 보안대책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.<신설 2014. 3. 31.>
- ④ 규정 제36조제2항 단서에서 "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기준"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.<신설 2016. 5. 12.>
- 1. 전자금융업자 : 법 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날 및 전자금융업 무를 신규로 수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것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2. 금융회사: 전자금융업무를 신규로 수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것

제3조의2(정보기술부문 계획서 제출) 규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정보기술부문계획서의 양식은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른다.

제4조 삭제 <2015. 9. 17.>

제5조 삭제 <2015. 9. 17.>

제6조 삭제 <2015. 9. 17.>

제7조 삭제 <2015. 9. 17.>

제7조의2(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 • 평가의 내용) 규정 제37조의2제3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취약점 분석 • 평가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.<신설 2014. 3. 31., 개정 2022. 12. 29.>

제7조의3 삭제 <2025. 2. 3.>

- 제7조의4(정보기술부문 사고보고) ① 규정 제37조의5제4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고보고 대상은 다음 각 호 와 같다.<신설 2025. 2. 3.>
 - 1. 정보처리시스템 또는 통신회선 등의 장애로 인하여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. 전자금융업무 지연·중단 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
 - 나. 전자금융업무 지연・중단 시간이 10분 이상이고 해당 전자금융서비스 가입자가 1만명 이상인 경우
 - 2. 전산자료 또는 프로그램의 조작 및 오류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
 - 3.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정보처리시스템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로 인해 이용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통지한 경우
 - 4.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고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.<신설 2025. 2. 3.>
 - 1.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고 중 영업점 내 장애의 경우 1개 영업점에 국한된 전자금융업무 중단・지연
 - 2.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고 중 이용자에게 단순 정보 제공을 위한 공개용 웹서버 등의 장애 또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와 무관한 장애
 - 3. 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
 - ③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별첨1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 야 하며,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고 중 사고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고의 경우 매월 발생한 사고를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 별첨2에 따라 일괄 보고할 수 있다. <제1항에서 이동 2025. 2. 3.> <개정 2014. 3. 31, 2017. 9. 5, 2025. 2. 3.>
 - ④ 제3항에 따른 사고보고는 최초보고, 중간보고 및 종결보고로 구분한다. <제2항에서 이동 2025. 2. 3.>
 - 1. 최초보고 : 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전자금융사고대응시스템(Electronic Financial Accident Response System : EFARS)으로 보고한다. 단, 전산장애, 금융정보교환망 미연결 등 부득이한 경우에 는 서면, 팩시밀리 또는 유선으로 보고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 전자금융사고대응시스템(EFARS)으로 보고가능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- 한 즉시 전자금융사고대응시스템(EFARS)으로 보고한다.<개정 2015. 4. 8., 2025. 2. 3.>
- 2. 중간보고: 제1호의 최초보고 후 사고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, 제 3호의 조치완료 시까지 2월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인지·발견일로부터 2월 이내 및 종결 시까지 매 6월마다 제1호의 방법에 따라 보고한다. 다만, 최초보고 후 조치완료 시까지 2월 미만이 소요될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.<개정 2017. 9. 5.>
- 3. 종결보고 : 사고발생 원인 파악 및 조치,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이 완료(사고금액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조치까지 포함)되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 때 제1호의 방법에 따라 보고한다. 다만, 최초보고시 조치가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종결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.<개정 2017. 9. 5., 2025. 2. 3.>
- ⑤ 감독원장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정보기술부문의 사고보고 등을 전담할 비상연락 담당자를 회사별로 지정할 수 있다. <제3항에서 이동 2025. 2. 3.><개정 2014. 3. 31,, 2015. 4. 8.>
- ⑥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비상연락 담당자가 제5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제4항제1호에서 정한 보고방법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 <제4항에서 이동 2025. 2. 3.><개정 2014. 3. 31., 2015. 4. 8.>
- ⑦ 감독원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 받은 내용이 제1항제3호의 사고 발생인 경우에는 규정 제37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침해사고대응기관에도 알려야 한다.<신설 2025. 2. 3.>

[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]

- **제8조(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)** ① 규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독원장이 정하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.
 - 1.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른 약관의 변경
 - 2.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사항을 제외한 사항으로서 단순히 업무편의를 위한 약관의 변경
 - 3. 사업자단체의 표준약관을 원용하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
 -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과 약관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.<신설 2021. 2. 25.>
 - 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변경권고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해당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권고의 수락여부 및 수정된 약관(수락한 경우에 한함)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감독원장이 따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신설 2021. 2. 25.>
- 제8조의2(국외에서 주로 영업하는 국외 사이버몰의 판단기준) 규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감독원장은 국외에서 주로 영업하는 국외 사이버몰을 판단하는데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한다.<신설 2014. 3. 31.>
 - 1. 사이버몰 운용자의 사무소, 인적·물적 시설의 소재지
 - 2. 사이버몰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 대상 국가의 수
 - 3. 사이버몰에 대한 국외 감독당국, 규제기관의 감독 규제여부
 - 4. 사이버몰에서 체결된 전자상거래 중 국내에 소재한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의 비중
 - 5. 규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사이버몰 여부
- 제8조의3(거래금액 기준 초과시 신고 등) ① 법 제3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자금융업자는 분기별 거래 총액(결제대행금액, 결제대금예치금액 또는 전자고지결제금액)이 규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거래금액 기준을 초과한

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

경우 해당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초과 내역 및 자본금 증액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친 자는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갖춘 후, 신고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등 관련 서류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장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등

- 제9조(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방법 등) ① 규정 제58조에 따른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는 검사기준일 현재 평가대상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실태를 IT감사, IT경영, 시스템 개발・도입・유지 보수, IT서비스 제공 및 지원, IT보안 및 정보호의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.<개정 2014. 3. 31.>
 -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문별 세부 평가 항목은 별표 4와 같다.<개정 2014. 3. 31.>
 - ③ 규정 제58조제3항의 평가등급별 정의는 별표 5와 같다.<개정 2014. 3. 31.>
- 제9조의2(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) ① 규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안관리방안은 별표 5-2와 같다.
 - ② 규정 제6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중요 점검사항은 별표 5-3과 같다.<신설 2015. 4. 8.>
- 제10조(업무보고서의 제출)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규정 제62조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분기말 현재로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 3. 31.>
 - ② 업무보고서 양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.
- **제11조(경영지도비율 산정기준)** 규정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.<개정 2014. 3. 31.>

[전문개정 2012. 05. 24.]

제4장 보칙

제12조 삭제

부칙 <제호,2025.2.3.>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5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자체 보안성심의 기준

[별표 1의2] 자체 보안성 심의 기준

[별표 2] 삭제

[별표 3]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·평가의 내용

[별표 3의2] 삭제

[별표 4]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

[별표 5] 평가등급별 정의

[별표 5의2] 보안관리방안

[별표 5의3] 중요 점검사항

[별표 6] 경영지도비율 산정기준

[별표 7]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

[별지 1] 업무보고서

[별지 2]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 사고보고서

[별지 3] 자체 보안성심의 결과보고서(신규 전자금융서비스)

[별지 4] 자체 보안성심의 결과보고서(공동 표준안)

[별지 5] 전자금융 거래금액 기준 초과 신고서

[별지 6]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업무 지정/변경 보고

[별지 7] 약관 제정(변경)보고

[별지 8] 정보기술부문 연간 계획서